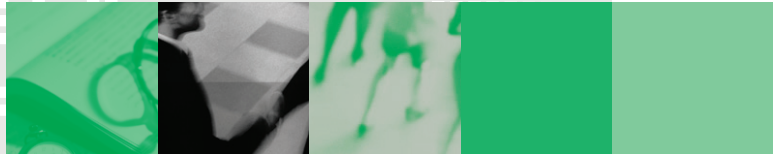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조주은(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예성(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2017. 1. 9.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1. 4.
초고 작성기간	2016. 10. 20. ~ 2016. 11. 18.
초안 검토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12월 12일(월) 오후 4시 - 실무위원: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이만우, 김준, 김유향, 유의정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전문가: 오미란 대표(젠더&공동체, 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요청일: 2016. 12.5. 답변일: 2016. 12.8.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 2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요 약

여성친화도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66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장조사결과,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역할 미확립과 조례 내용의 구체성 부족으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동력이 부족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성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및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례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둘러싼 사업의 안정성 미확보 문제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지자체는 관련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더불어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선정기준과 맞물려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 부서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

역할이 모니터링, 홍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관거버넌스 체계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의 다양성 부족이다.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컨설팅의 범위 및 컨설턴트의 역할이 협소한 상황이었다. 또한 타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협조 요청 및 협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의 영세함이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은 사업시행 원년부터 1억 원 미만이었고, 2015년에 법적근거를 갖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의 강화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우수사례 표창 및 DB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요소 및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 대상 및 내용의 범위 확대이다. 정책형성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도입이다. 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 사업을 기획 및 개발하는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차 례

## □ 요약

### I. 현장조사개요 / 1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
- 2. 조사 방법과 내용 ..... 5
- 3. 조사 일시와 방문기관 ..... 7

### II. 여성친화도시의 운영 현황 / 10

- 1. 관련 법규 ..... 10
  - 가. 법령 ..... 10
  - 나. 조례 ..... 12
- 2. 여성친화도시의 (재)지정 ..... 15
  - 가. 지정현황 ..... 15
  - 나. 지정 및 재지정 요건 ..... 17
- 3. 정책형성교육 및 컨설턴트 현황 ..... 21
  - 가. 정책형성교육 현황 ..... 21
  -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현황 ..... 22
  - 다. 전담인력 현황 ..... 24
- 4. 예산의 규모와 지원형태 ..... 25
- 5. 사업추진 실적과 성공요인 ..... 27
  - 가. 사업추진 실적 ..... 27
  - 나. 대표사례의 성공요인 ..... 28

### III.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문제점 / 32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동력 부족 .....	32
가. 주무부처의 역할 미확립 .....	32
나. 조례 내용의 구체성 부족 .....	33
2.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둘러싼 사업의 안정성 미확보 .....	34
가. 이행점검지표의 자의성으로 인한 지역특성 부각 미흡 .....	34
나. 시민참여단의 미약한 역할로 인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부실 ..	40
3. 교육 및 컨설팅의 다양성 부족 .....	41
가. 공무원 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족 .....	41
나. 컨설팅의 범위 및 컨설턴트의 역할 협소 .....	41
다. 타 부서와의 협업 시스템 미비 .....	42
4. 예산 규모의 영세성 .....	43

### IV. 개선과제 / 45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동력 강화 .....	45
가. 주무부처의 역할 재정립 .....	45
나. 조례내용의 구체화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원 방안 강화 .....	46
2.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요소와 과정의 안정성 확보 .....	48
가. 지정요소와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로 지역 특성 부각 .....	48
나. 시민참여단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	50
3. 교육 및 컨설팅 대상 및 내용의 범위 확대 .....	51
가. 정책형성 교육의 강화 .....	51
나. 컨설턴트 구성 및 역할 다양화 .....	52
다. 타 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54
4. 예산의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도입 .....	54



## V. 결론 / 56

### 참고문헌

### 부록

1.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2009년~2016년) ..... 60
2. 여성친화도시 관련 이행점검 지표의 변화 ..... 64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역별 컨설턴트 배치현황 ..... 70
4.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주요 사업 ..... 71
5. 여성친화도시 조례 현황 ..... 72

## 표 차례

[표 1] 여성친화도시 간담회 현황 .....	5
[표 2] 조사내용 .....	6
[표 3]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	8
[표 4] 조례에서 시민참여단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	14
[표 5]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16
[표 6] 여성친화도시 목표의 변화(2009년~2016년) .....	18
[표 7] 2014~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	19
[표 8] 2016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 .....	20
[표 9] 공무원 평균 교육 참여율 .....	21
[표 10] 시민 교육 현황 .....	22
[표 11]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별 여성가족부 소속 컨설턴트 배치현황 .....	24
[표 12]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인력 수 .....	25
[표 13] 여성친화도시 예·결산 내역(2010년~2016년) .....	26
[표 14]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 사업 수 .....	28
[표 15]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사업의 증감(2014년~2015년) .....	28
[표 16] 여성친화도시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유형 및 조성방향 .....	33
[표 17]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이드라인 설명서 .....	47

## 그림 차례

[그림 1]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3
[그림 2]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운영 체계 .....	23

## 사 진 차 례

[사진 1] 민관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	31
[사진 2] 방문한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대표사업 .....	38

## I. 현장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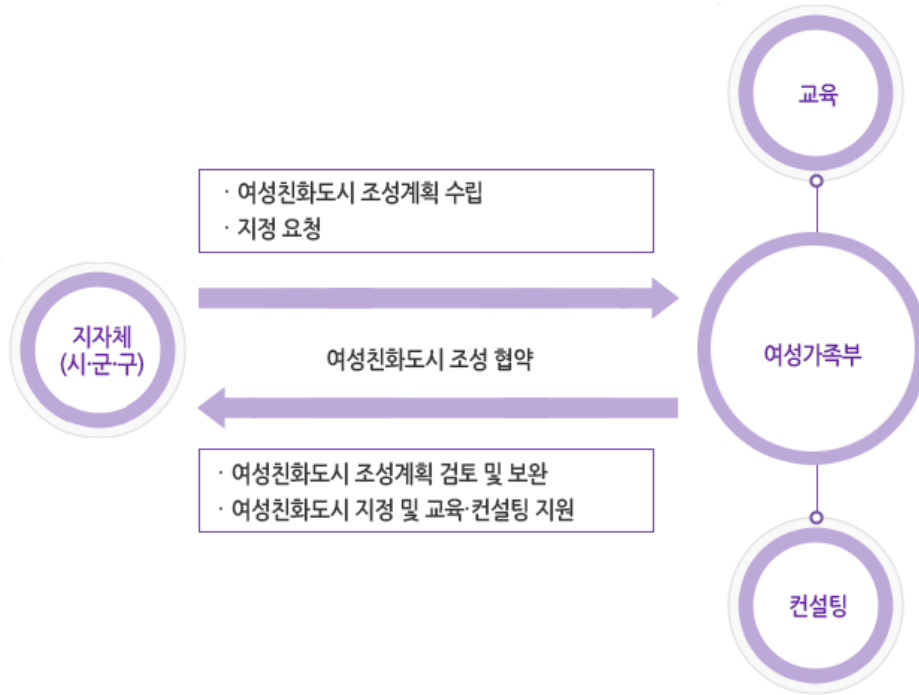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시에 대한 권리’<sup>1)</sup>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음<sup>2)</sup>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넓게 보았을 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공간의 개선에 여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
  -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의 자발적인 제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익산시를 지정하면서 추진하게 된 상향식 정책임
  -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음

- 
- 1)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는 도시의 공간과 서비스 및 문화 등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며, 그 결과 모든 주민들이 존중받도록 하자는 것임
  - 2) 최유진 외,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총 66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지정, 정책형성교육, 분야별 정책컨설팅을 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음
  -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여성가족부에 지정요청을 함
  -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함
    -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여성친화도시 성과를 점검하고 있음
  -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그림 1]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지역 시민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주로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컨설턴트로 배치되어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지역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sup>3)</sup>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3) 여성이 사회의 모든 공공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를 갖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는 ‘여성친화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여성친화도시 관련 법규, 여성친화도시의 (재)지정, 교육 및 컨설팅, 예산규모 및 지원기준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사회시스템 운영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함.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데 있음



## 2. 조사 방법과 내용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조사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이임
- 문헌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등에서 발간한 여성친화도시 연구 보고서, 국회 안팎에서 ‘여성친화도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전문가간담회와 지역현안간담회 자료 및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함
-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파악함

[표 1] 여성친화도시 간담회 현황

일시	행사명	발표자와 토론자	내용
2016. 3. 11.	전문가간담회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발표자: 최유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 론자: 이영민 교수(숙명여 대)임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개선방안
2016. 7. 6.	지역현안간담회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광주광역시)	발표자: 최유진 단장(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추진전략단), 오미란 대표 (젠더 & 공동체) 토론자: 배진하 의원(광주 광역시 남구의회), 전인근 사무관(광주광역시 여성 정책담당), 손희숙 팀장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침 화정책팀), 김연주 대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 공동체 ‘정’), 조주은 입법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과 향후 과제-광주광역시 를 중심으로

일시	행사명	발표자와 토론자	내용
2016.11.23.	전문가간담회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발표자: 강선미 소장(하랑 성평등교육연구소), 박태 원 교수(광운대학교)	여성친화도시사업 현황과 과제-시민참여활성화 방 안을 중심으로, 여성친화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 획적 접근

- 현장조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대상 지사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표 2]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구체적인 내용
법령	여성친화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지자체의 조례	여성친화도시 관련 법규,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
체계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조성요소	여성친화도시의 목표, 조성요소, 이행점검지표, 재지정시 심사기준, 재지정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전문인력	지자체 공무원과 컨설턴트 현황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황과 애로사항, 컨설턴트들의 구성과 컨설팅 방식
예산	예산의 규모와 지원기준	예산관련 회계의 특성, 예산의 규모와 배분방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여성친화도시사업과의 적합성
개선 의견	담당자들의 의견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주로 여성단체)의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사업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분석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의 성공요인과 그렇지 않은 도시의 실패원인

### 3. 조사 일시와 방문기관

-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조사활동은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이루어짐
    - 현장조사활동은 3월부터 5월까지의 시기와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8개 광역시·도 소재의 12개 지자체를 방문하였음
  - 현장조사를 위한 방문기관과 면담대상자 선정은 다음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첫째, 지자체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였음
    - 둘째, 여성친화도시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지자체, (재)지정에서 탈락된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로 유형화하여 모두 포함시켰음
    - 셋째,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지역에서 전문가와 여성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sup>4)</sup>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할 때 지자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시간 등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성단체 등 민간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 넷째, 지자체를 방문할 때 지자체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연구원)에 대한 면담도 함께 실시함
- 4)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지자체가 수립하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음)을 전문가-여성단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표 3]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순번	일자	시·도	면담대상자
1	2016. 3.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친화팀장과 팀원들
2	2016. 3. 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장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제주여민회 공동대표와 상임대표
3	2016. 4. 2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젠더&공동체 대표
			동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꿈의광산협동조합 이사장
4	2016. 4.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센터장,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무관 울산광역시 중구청 주무관
5	2016. 5. 26.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사무관, 대전서구 주무관
6	2016. 7. 29.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복지환경국장
7	2016. 10.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무관
8	2016. 10. 11.	경기도 성남시	가족여성과장, 담당 주무관
9	2016. 10. 12.	강원도 강릉시	담당 과장, 주무관
			강릉여성의 전화 회장
			강릉시의회 의원

순 번	일자	시·도	면담대상자
10	2016. 10. 14.	강원도 원주시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주무관
			원주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11	2016. 10. 21.	광주광역시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 II. 여성친화도시의 운영 현황

### 1. 관련 법규

#### 가. 법령

- 여성친화도시의 법률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임
  - 동 법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시작 당시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었으나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舊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규정이 명시되었음
  - 제19대 국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sup>5)</sup>이 통과되었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sup>6)</sup>은 대안반영폐기됨

5)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910476, 제안일자: 2014. 5. 2.)

6) 전정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97, 발의연월일 2013. 11. 22.)

제39조(여성친화도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원하는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양성평등 참여 촉진 방안, 여성 역량 강화 정책 방안, 여성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여성 권익 증진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재지정 될 수 있음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나. 조례

- 2016년 기준 전국 74개 지자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2010년 10월 6일 전라북도 익산시의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반영되면서 2015년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증가하였음



-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차가 높아진 지자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기준 66개 여성친화도시 중 46개 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강원도 영월군은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영월군 여성친화도시모니터운영조례」 등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2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 익산시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규칙」을 시행하고 있음
  -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 조례는 없지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시행 중에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임
  - 지자체에 따라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여성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 운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민참여단은 지자체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시민참여단’ 및 ‘모니터단’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음
    - 주요 시민참여 활동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주민홍보 및 의견 수렴 등임

[표 4] 조례에서 시민참여단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유형	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9개	거창군, 칠곡군, 양산시, 경산시, 논산시, 태안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터즈단	8개	아산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남구
모니터단	5개	구미시, 제천시, 용인시, 수원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기존의 여성정책과 다른 점은 여성친화공간조성 및 시설 설치 등 물리적 환경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기존의 여성정책은 성평등 촉진 제도 마련, 여성 복지제도 확충, 폭력 방지 등 법·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여성친화도시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여성 친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 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

## 2. 여성친화도시의 (재)지정

### 가. 지정현황

- 지역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증대로 매년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되어 왔음
- 2009년도 익산시,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매년 지정을 확대하여 2016년 현재 총 66개 도시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표 5] 참조)
  - 2009년도 2개, 2010년도 6개, 2011년도 20개, 2012년 9개, 2013년 11개, 2014년 7개, 2015년 11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새로 지정받았음
  - 재지정 심사를 통해 익산시와 여수시가 2014년에 재지정을 받았으며, 대구 중구와 달서구,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가 2015년에 재지정을 받았음
  - 2015년 서울시 강남구와 당진시가 처음으로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취소되었음
  -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음

[표 5]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지역	계	2009년 지정	2010년 지정	2011년 지정	2012년 지정	2013년 지정	2014년 지정	2015년 지정
계	66	2	8 (재지정탈락 2)	20	9	11	7	11
서울	5		강남구('15년 탈락)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부산	10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북구, 금정구, 영도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진구
대구	3		중구, 달서구('15년 재지정)		수성구			
인천	3			동구, 부평구		연수구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3					서구		동구, 대덕구
울산	-							
경기	10		수원시, 시흥시('15년 재지정)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강원	4		강릉시('15년 재지정)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충북	2		청주시('15년 재지정)		제천시			
충남	5		당진시('15년 탈락)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논산시
전북	3	익산시('14년 재지정)		김제시		남원시		
전남	3	여수시('14년 재지정)		장흥군				강진군
경북	5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4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를 재구성

나. 지정 및 재지정 요건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목표에 근거한 일정한 조성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지정받은 지자체는 매년 이행점검지표에 근거하여 점검을 받으며, 5년 뒤에는 재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음
-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여건은 성평등 정책추진 의지와 민관협력이 가능한 인프라 구비, 추진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제2항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는 [표 6]와 같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 5가지임
  - 2016년 여성친화도시의 조성목표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으로 변경되면서 안전과 가족친화를 더 강조하고 있음
    - ‘일·가정 양립’이 국정과제임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는 2016년도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세부과제에서 상위목표로 전환함

[표 6] 여성친화도시 목표의 변화(2009년~2016년)

2009~2015년	2016년~
①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좌 등
②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③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 - 여성과 사회적 약자, 주민 전체가 안전을 누릴 권리 보장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④ 건강한 환경 조성 - 여성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⑤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 다양한 연령·계층 여성들의 소통과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 사회 여성 활동 가시화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기준은 신규로 지정받기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심사기준임
- 2016년 기준 사업기반 구축정도(40점),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지표(60점) 2개 부분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표 7] 참조)
  - 사업시행 원년인 2009년부터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4차례 변경되었음([부록 1] 참조)

[표 7] 2014~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항목	지 표	내 용	비중	
사업기반 구축정도 (40)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추진	■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5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기획·예산·총무부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	
	제도적 여건 (20)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여부	5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환류 실적	5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15)	■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5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5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관장 활동 실적 등	5	
	거버넌스 추진기반 (5)	■ 지자체 내 조례 제·개정, 민관협력 사업 등에서 여성 조직 참여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 및 활동 현황	5	
	여성 친화도시 4대 목표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6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10)	■ 추진목표의 명확성	5
			■ 사업 목표와 관련 사업 추진계획의 부합성	5
사업 계획의 충실성 (40)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 및 실효성	20	
		■ 해당지자체 자체 신규사업 발굴	5	
		■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15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10	
계			100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여성친화도시의 이행점검 지표는 지정받은 도시를 대상으로 매해 성과를  
점검할 때 적용되는 기준임

- 2016년 여성친화도시의 이행점검 지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민-관 협력, 대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8] 참조)
- 사업시행 원년인 2009년부터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여성친화도시 이행 점검 지표 또한 4차례 변경되었음([부록 2] 참조)

[표 8] 2016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

구 분		1년차 도시	2-4년차 도시
개요		총괄평가	총괄평가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제도화	사업관련 조례 제·개정	사업관련 조례 제·개정
		제도화 대표 사례	성과평가
		중장기계획 수립	인센티브
	주무부서	인력현황	인력현황
		여친도시 사업예산	여친도시 사업예산
			타부서 컨설팅
	공무원 교육	현황 및 참여비율	현황 및 참여비율
부서협력체계	부서협력 대표사례	부서 협력 대표 사례	
민-관 협력	구성다양성	구성비율	구성비율
	협력 사업	대표사례	대표사례
대표사업		2015년 시행계획 이외의 추가사업 목록	2015년 시행계획 이외의 추가사업 목록
		공모사업 리스트	공모사업 리스트
			사업추진 성과(총괄)
			대표성 사업 성과
		기존사업 개선 사례 신규사업 발굴 사례	기존사업 개선 사례 신규사업 발굴 사례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 3. 정책형성교육 및 컨설턴트 현황

#### 가. 정책형성교육 현황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내용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일반적인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목표,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성 등임
- 2015년 기준 여성친화도시 담당 주무부서 공무원의 67.2%가 교육에 참여하였음
  - 5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율은 평균 24.8%이며, 지자체 전체 공무원의 교육 참여율은 평균 19.4%임

[표 9] 공무원 평균 교육 참여율

(단위: %)

	2009년 지정	2011년 지정	2012년 지정	2013년 지정	2014년 지정	전체 (평균)
주무부서	75.0	61.5	66.7	38.2	80.7	67.2
5급 이상	-	24.7	9.4	40.5	27.2	24.8
전체 공무원	-	25.0	4.8	15.7	33.8	19.4

자료: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그동안 지역사회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시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45개 여성친화도시에 시민참여단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한 도시는 30개 지자체임
  - 교육시간은 시민참여단은 평균 8.0시간, 모니터단 0.8시간임
- 일반시민 대상 교육은 34개 여성친화도시에서 실시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진행됨

[표 10] 시민 교육 현황

(단위: 개, 명, 시간)

구분		2011년 지정	2012년 지정	2013년 지정	2014년 지정	전체 (평균)
시민 참여단	도시수	13	6	7	4	30
	시간	10.9	4.9	8.3	5.7	8.0
모니터단	도시수	1	2	2	-	6
	시간	0.5	2.2	0.6	-	0.8
일반 시민	도시수	15	7	6	5	34
	인원	4,032	3,575	3,196	2,610	13,575
	시간	10.1	15.4	13.8	4.0	10.7

주: 시민참여단에는 서포터즈단과 자문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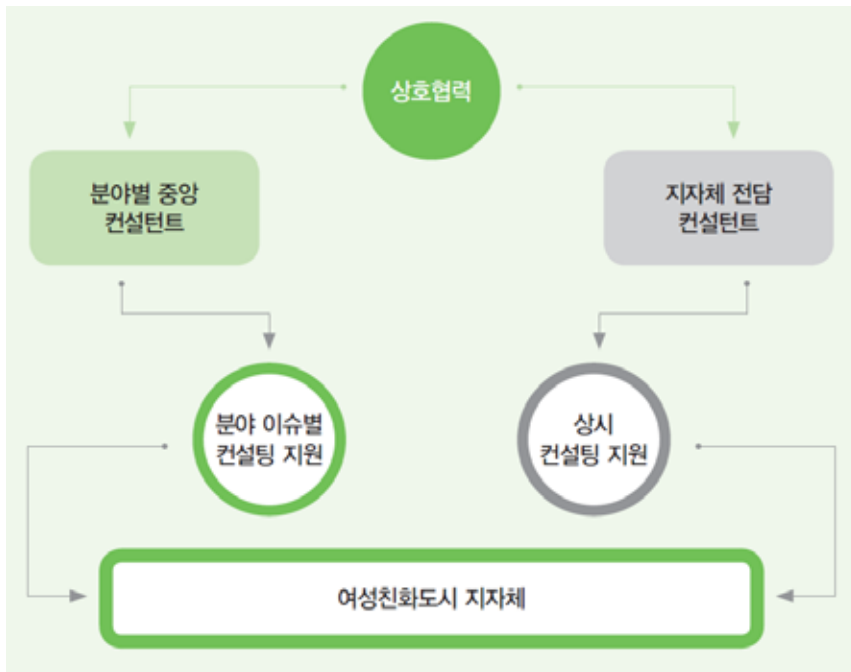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현황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컨설턴트는 조성현황 점검,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협의, 공모사업 및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 컨설턴트 배치는 지자체와 1대1로 연계한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와 분야별 중앙 컨설턴트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개선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소속의 중앙 컨설턴트는 도시계획·건축·조경, 젠더 거버넌스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함

[그림 2]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운영 체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KWDI Brief』, no.34, 2015, p.8.

- 현재 여성친화도시에는 26명의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있음 ([부록 3] 참조)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 소속은 지자체가 출연한 여성정책연구소가 대부분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소수의 개인 연구소 소속 컨설턴트도 있음
- 여성가족부 소속 중앙 컨설턴트는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의 도시 관련 전문가가 3명 배치되어 있으며, 젠더 거버넌스 관련 컨설턴트도 3명 배치되어 있음

[표 11]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별 여성가족부 소속 컨설턴트 배치현황

분 야	소 속
도시계획, 도시재생, 공간, 건축, 조경 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젠더공간연구소 소장
젠더 거버넌스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전남대표
	이화여대 교양학부 교수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 다. 전담인력 현황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공식적인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음
  -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시민참여단 구성 및 민·관 협의체 구성, 관련 교육 기획 및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담당함
  - 타 부서가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9개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 인력은 총 115명임

- 2015년 주무부서 사업 추진 인력은 지자체 평균 2.3명으로, 2014년 1.9명에 비해 인력규모가 증가함
- 2명의 인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서 전체가 여성친화도시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도 인천 부평구, 의정부시, 광주 북구,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있으며, 부서명은 ‘여성친화팀’임

[표 12]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인력 수

(단위: 개)

인원	2013년	2014년	2015년
사례 수	39	48	49
9명	1	-	-
6명	-	-	1
5명	-	1	1
4명	1	1	2
3명	5	10	9
2명	15	17	33
1명	17	19	3

자료: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 4. 예산의 규모와 지원형태

- 중앙정부는 여성친화도시의 우수사업 공모, 정책형성교육 예산으로 매해 1억 미만의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sup>7)</sup>
- 사업시행 이후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3,500만 원(2011년), 1억 원(2012년), 9,900만 원(2013년), 9,900만 원(2014년), 9,900만 원(2015년), 3,500만 원(2016년)임

7)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 정부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하여 2012년~2015년에 집행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6,000만 원(공모사업), 3,500만 원(정책형성교육)<sup>8)</sup>

[표 13] 여성친화도시 예·결산 내역(2010년~2016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친화도시 구성·확산	예산	-	35	100	99	99	99	35
	결산	-	34	97	95	93	95	32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예산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예) 00시 근린공원 조성사업 : 여성친화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공원설계 개선(안심화장실, 수유실 설치, 산책로, 무장애공간 구성, 어린이 도서관 등 포함)
- 지자체당 평균 1,200만 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8) 정책형성교육의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의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고 사업시행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원임

- 이 밖에도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거나 자체예산으로 시민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2016년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자체 양성평등기금 중 여성친화도시 예산(700만 원)을 확보하여, 여성리더역량강화교육<sup>9)</sup>(300만 원)을 실시함
  - 2016년 기준 칠곡군은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대상 역량강화교육(300만 원)을 실시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시흥시는 자체적으로 3,750만 원의 여성친화도시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 시흥시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1,500만 원)을 하고 있음<sup>10)</sup>
-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광주·대전·부산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또는 추진 지원을 위해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마을사업, 대전광역시는 인프라 개선 사업, 부산광역시는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5. 사업추진 실적과 성공요인

### 가. 사업추진 실적

- 2015년 기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평균 약 51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9) 대상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포함한 지역 여성단체 회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10) 나머지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1,5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750만 원)에 운용되고 있음

- 관련 사업이 적은 지자체는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지자체는 111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14]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 사업 수

(단위: 개)

	20개 이하	20~40개	40~60개	60~80개	80개 이상	평균 사업수
지자체 수	5	8	18	7	4	51.3

자료: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 대표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안전 분야에 치중되던 과거와 달리 일자리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 및 문화 분야 사업 발굴도 있음

[표 15]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사업의 증감(2014년~2015년)

구 분	2015년			2014년		
	신규 사업	개선 사업	계	신규 사업	개선 사업	계
안전 분야	14개	26개	40개	26개	8개	34개
일자리 분야	8개	15개	23개	4개	7개	11개
건강·환경·문화	6개	5개	11개	1개	7개	8개

자료: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나. 대표사례의 성공요인

- 방문한 도시 중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자체장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초기에 자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선도해왔던 도시 중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가 재지정에 탈락한 도시들의 공통점으로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을 발견할 수 있음
- 성공적인 도시의 지자체장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등 사업기반구축에 적극적임
  - 방문하였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여성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매우 열성적이며 여성가족과<sup>11)</sup>에 여성친화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었음
-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과 조성의지는 해당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도와 기획력으로 연결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사상구<sup>12)</sup>는 공무원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구비를 확보하여 여성친화도시정책 포럼, 여성 100인 원탁토론회, 여성친화 홍보관 운영, 찾아가는 구민교육, 간부 공무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시간 이상 별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둘째, 민관협력체계의 내실 있는 구축임
  - 주인의식과 지역 소속감 등을 고취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은 민관협력체계의 내실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지역의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구성

11)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팀, 성평등정책팀, 청소년팀으로 구성됨

12)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2010년 2월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사건인 이른바 ‘김길태 사건’ 발생지역이라는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지자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받아들여지면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됨<sup>13)</sup>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민참여단인 ‘여성친화일꾼’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신청 기업체 현장조사 실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지역 주민인터뷰, 아동안전지도 제작 참여 등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함
  -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명절증후군 탐구생활’이라는 영화를 직접 제작하여 2014년 여성영화제 본선에 진출하였고, ‘꾼’이라는 인형극단을 직접 꾸려서 영·유아 대상 폭력예방활동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중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돌봄, 나눔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조성한 사례도 있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정’은 2013년에 ’13 여성·가족친화마을에 선정되어 마을손수 나눔카페, 천원밥상&공간, 안전교육, 미소교육, ‘도담도담 야간돌봄센터’, ‘이웃이모 되어주기’ 등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 광주 광산구 광산형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꿈의 광산 협동조합’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으로 시작하여 도서관을 통한 돌봄, 재봉틀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을 공유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 사례임

13) 면담했던 특정 지자체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본인이 여성친화조정위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음. 반면 여성친화도시에 적극적인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들은 지역의 여성단체인 ‘원주 여성민우회’를 방문할 때 동행해주었고, 여성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저는 언제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이야기하고요. 시에서는 잘 이해해주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해주고요. 우리는 잘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함

[사진 1] 민관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광주시 북구 양성평등주간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들이 나와서, 지역전문가가 곡을 만든 ‘신명나는 여성친화 광주북구’(노래제목)에 맞추어 군무를 하는 모습

2013년에 “온마을이 배움터”라는 기치 하에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정’이라는 여성가족친화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이웃이모 되어주기’ 사업

### Ⅲ.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문제점

####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동력 부족

##### 가. 주무부처의 역할 미확립

-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의 성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음
- 지자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방향과 명확한 (재)선정기준 등을 제시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사업의 확대발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음

여성친화도시사업은 매년 여성가족부의 업무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기도 하고요 여성가족부의 다른 사업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공사업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의 컨설턴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공문하나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지방에서 멀리 서울의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이 개최되어 가보면, 그동안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나. 조례 내용의 구체성 부족

-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공간구조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현재 조례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여성친화도시 조례에서는 도시공간을 단순히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 시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단편적인 시설 개선 또는 확충에만 한정되고 있음
  - 조례상에서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을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지 않고 개별적인 시설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표 16] 여성친화도시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유형 및 조성방향

유형	영역	조성 방향
도시기반 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 보행편의 - 대중교통의 안전성 -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 직장 기정 양립 환경 조성
공공이용 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등	-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공간 -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료: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재구성

## 2.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둘러싼 사업의 안정성 미확보

### 가. 이행점검지표의 자의성으로 인한 지역특성 부각 미흡

- 현장조사결과, 개별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를 구성하는 지표가 제시하는 사업을 이행하는데 급급하다보니 도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6년 기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도시에 적용되는 조성기준의 내용([표 7] 참조)을 살펴보다도, 일부 지표내용을 구성하는 사업을 점점·확인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큼
  - 현장조사에서 만난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15점)가 일회성 행사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함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보면 ‘해당도시의 조성의지’가 지자체장이 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창단식에 참여하는거. 그런데 그게 해당도시의 조성의지 중 기관장 활동 실적으로 봐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익명의 공무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100점 만점에 2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100점 만점에 40점)인데,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려고 하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자체에서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의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특성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여성위원의 중복이 지나친 경우도 있음

- ◆ 2016년 기준 울산광역시에는 71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그 중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촉직 여성위원은 28명, 3개 이상은 5명, 4개 이상은 3명, 5개 이상은 4명임<sup>14)</sup>
  - ◆ 2016년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는 75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그 중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촉직 여성위원은 2개 이상은 22명, 3개 이상은 7명임<sup>15)</sup>
  - ◆ 2016년 기준 강릉시에는 102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그 중 2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된 위촉직 여성위원은 22명, 3개 이상은 9명, 4개 이상은 5명이며, 5개 이상도 8명이나 있었음<sup>16)</sup>
-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농산어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위원의 부재”<sup>17)</sup>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력 풀(pool)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커요. 그런데 지정기준들이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가령 위원회를 구성할 인력풀도 부족하고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

솔직히 대도시가 아니면 우리같은 지역에는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성이 없는데 여성위원을 40% 이상 채우라고 하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공무원)

14) 울산광역시 제출자료(2016)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출자료(2016)

16) 강릉시 제출자료(2016)

17)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요건이 ‘관련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는 아님

- [표 7]의 ‘2014~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인력’(5점) 역시 형식적인 요건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 또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자체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sup>18)</sup>([사진 2] 참조)
  -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표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업소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자체는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입법조사관들이 방문한 지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농산어촌, 공업도시 등 다양하였으나, 현장조사과정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입법조사관들에게 안내한 대표사업은 일부특정지역의 공간변화와 관련된 안전사업, 혹은 여성위인과 관련된 기념관에 한정되었음
    - 특정 지자체는 자체 조성한 공원이름에 ‘여성친화 공원’ 등으로 명명하여 대표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은 어느 공원과 다를 바 없음
    - 여성 농어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의 대표사업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위인 기념사업 관련 시설물 조성으로 한정되고 있었음
  - 즉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자체의 조직, 공간과 주민전체의 의식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대표사업은 우범지역에 CCTV 설치, 골목길 벽화제작,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화단조성 등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공간개선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큼

18)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생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근래에 이루어져 새로운 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유사사업의 추진은 여성친화도시 본래의 취지를 흐트리고 있음



- [표 15]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2015년 기준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사업으로 건강·환경·문화 분야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135개의 (신규·개선사업)사업 중 40개(29.6%)가 안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 물론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가시적인 도시미관 개선사업과 기념관 설립 등과 관련된 사업은 여성친화사업의 본래 취지를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음

[사진 2] 방문한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대표사업

지자체 명	여성친화 도시 관련 대표사업	
<p>인천광역시 부평구</p>	 <p>부평구 여성친화팀이 지역여성 네트워크 사업 및 양성평등 교육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부평구 풀뿌리 여성센터</p>	 <p>부평구 풀뿌리 여성센터 내부의 육아나눔터·모유수유실</p>
<p>제주특별자치도</p>	 <p>제주시가 2014년 10월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개관한 김만덕 기념관</p>	 <p>제주시가 2016년 4월 1일에 개관한 김만덕 객주집</p>
<p>광주광역시 북구</p>	 <p>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일명 '디카거리' 조성</p>	 <p>차고·담장 등의 페인트 등 벽화작업과 화단조성, 거리조명을 설치함</p>
<p>광주광역시 광산구</p>	  <p>광주 광산구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 중 '운남 주공단지 부녀회'. 이 사업은 동 지역의 '행운목(행복 나눔 운남 목련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은 도서관을 운영에 연계하여 돌봄공동체로 확대. 이 사업은 이후 재봉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봉틀을 이용한 이불 등 소품을 만들어내는 '꿈의 광산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창출</p>	

Ⅲ.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문제점

지자체 명	여성친화 도시 관련 대표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대 후문 여성친화거리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여성에게 소모임 공간을 제공하고 양성 평등도서 및 자료를 비치하는 '우먼 라이브러리' 조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여성에게 강의하고 토론하는 '사상 토크 콘서트' 개최
강원도 강릉시	 시민참여단이 조성한 화단 및 벤치	 작은 정원 조성
강원도 원주시	 원주 출신 위인 임윤지당 선양관	 여성가족공원

자료: 지자체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자료들을 재구성

나. 시민참여단의 미약한 역할로 인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부실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이고, 실제로 조성기준과 이행점검지표에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sup>19)</sup>의 활동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가 부재한 가운데, 시민참여단이 시정 사업에 대한 단순 홍보요원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음
- 지자체의 관련 조례의 내용이 시민참여단의 적극적 역할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단순한 모니터링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시민참여단의 명칭도 지원이라는 의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그 보다 더 소극적인 의미의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자체마다 시민참여단의 자발적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 이러한 시민참여의 제약은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지역의 시민참여단은 거의 대부분 통장 등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에 대한 취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단체 활동가)

19)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연령은 50대 이상이 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은 34.4%가 주부, 여성·시민 단체 24.4%, 부녀회 등의 마을 조직 구성원이 19.6% 등으로 구성됨

### 3. 교육 및 컨설팅의 다양성 부족

#### 가. 공무원 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족

-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 정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현장조사 과정에서 만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거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방법,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사례도 있었음
-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분야 뿐 아니라 고용, 사회적 기업, 안전 시스템 구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각 부분에 대한 이해 함양을 위해 교육내용의 전문화·다양화가 필요함

저는 장기간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그동안 많은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교육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담당 강사가 화장실 이야기를 꺼내면 ‘또 화장실 이야기’ 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관련 강사의 수준과 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 나. 컨설팅의 범위 및 컨설턴트의 역할 협소

- 현재 컨설팅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할 때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또는 이행점검 평가 보고서 작성 시 실질

적인 컨설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 컨설팅의 범위가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경우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지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의 경우 지정을 위한 준비 방법과 탈락 요인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컨설팅은 지정도시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자 교육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해주지만,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에는 그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컨설턴트의 전문적 다양성이 부족함
- 현재 컨설턴트 중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도시 공간 관련 전문가는 중앙에만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에 배정된 컨설턴트는 여성정책 전문가만 있어 타 부서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지역 컨설턴트의 경우, 여성정책 전문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타 부서 사업 자문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었음

#### 다. 타 부서와의 협업 시스템 미비

- 여성친화도시를 지역 전체 사업에 여성친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낮은 이해와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 부서에 대한 전담 구성원을 배치 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타 부서와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지역 전체 사업에 대한 여성친화적 요소를 관리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특성상 타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경우도 있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협조를 받기 어려워요.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 4. 예산 규모의 영세성

-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은 사업시행 원년부터 1억 원 미만이었으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에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3,500만 원이라는 초저예산으로 운영되었고, 결산은 3,200만 원임
- 2016년도에는 매년 시행되던 6,000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조차 삭감되어 배정됨
- 여성가족부가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여성친화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장조사결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지자체의 관계자들은 모두 예산(사업비)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하여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움과, 인센티브 부재에 따른 사업추진동력의 부족을 지적하였음



## IV. 개선과제

###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동력 강화

#### 가. 주무부처의 역할 재정립

-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동력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사업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강화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간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진행 및 공지사항과 관련한 내용공유가 공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애로사항과 정책건의사항 등을 점검해야할 것임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하여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임
  - 신규 사업 발굴, 우수 지자체포창 및 우수시민참여단포창 등 인센티브 제공, 여성친화도시 모범사례 DB 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과 여성친화도시의 연계사업발굴도 고려할 수 있음

나. 조례내용의 구체화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원 방안 강화

-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의 구체적인 근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참여단 선발 규정, 주무부서와 타 부서간 업무 조성 지침,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역할(시행계획 심의 및 의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범위 및 역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방법, 교육 대상 및 시간, 여성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연구개발, 홍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광역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도시공간과 관련된 요소를 규정하는 조례와 계획 및 지침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여성친화적 요소를 도시개발 초기단계부터 고려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및 시설배치 관련 지침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항목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업단지개발, 주택단지개발,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행정가, 기술사, 건축사 등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성평등한 도시개발기준 또는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 도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도시·군 도시계획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sup>20)</sup> 수립시 도시의 기본적인 조성 방향 제시에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도록 법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20)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려할 수 있음<sup>21)</sup>)

-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이드라인 설명서’의 경우 계획 목표의 기본방침으로 여성친화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표 17]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이드라인 설명서

<p>1. 계획의 목표</p> <p>1. 기본방침</p> <p>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사회적 약자 배려도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사회적 약자(여성, 고령자, 장애인, 유소년, 이주민)를 위한 도시계획수법을 계획에 반영한다. 도시계획수립 시 이들을 배려한 직주근접과 친환경의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가 되도록 한다.</p> <p>2. 주요검토사항</p> <p>핵심사항: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 도시계획기법, 범죄예방형 환경설계기법(CPTED),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계획기법 등을 명시적으로 반영</p>
--

자료: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이드라인 설명서』, 2015, p. 9~10.

- 또한,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여성친화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넣도록 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등에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

21) 독일의 경우 「연방건축법」 제1조(건축계획의 과제, 개념, 원칙에서 고려할 사항) 제6항(건축기본계획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 제3호에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 및 교육체제와 스포츠, 여가, 휴식의 중요성’을 삽입(2007년 2월부터 효력)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공간정책의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시재생사업과 노후주거환경을 정비 및 개선하는 근린재생 일반형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sup>22)</sup>

## 2.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요소와 과정의 안정성 확보

### 가. 지정요소와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로 지역 특성 부각

- 여성친화도시 지정·이행점검 지표는 지역 내 여성의 참여를 통한 성평등, 안정성, 편리성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의 이행점검 지표도 주민전체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유형화하고 명확한 세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가령,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는 한도를 제시해야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임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함
    - ◆ 배점이 15점으로 상당히 큰 ‘해당 도시의 조성 의지’가 1회적으로 점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임

22)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근린재생형은 다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유형화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여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함.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사업이 도시전체의 가치, 거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간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히 함
    - ◆ 중앙정부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의식고양을 꾀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기획하여야 할 것임
    - ◆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돌봄공유, 협동조합 결성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고자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막고 대표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업구조 등을 포함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요소와 이행점검지표가 대도시, 공단지역, 농산어촌 등에 맞추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sup>23)</sup>
  - 더불어 초기 지정 이행 5년, 재지정을 받은 도시의 지정요소와 이행점검 지표 역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23)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지표(대기업, 중소기업)가 운영 중인 것을 참고할 수 있음

나. 시민참여단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과 이행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시민참여단) 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시민참여는 단순 모니터링 또는 홍보요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경험을 정책추진과정에 반영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여성친화 관련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시민참여단)’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모니터단’ 등을 ‘시민참여단’으로 통일하여야 할 것임
    - ◆ 시민참여단의 구성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이용자이자 소비주체인 여성이 바라고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용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젠더 거버넌스<sup>24)</sup>를 바탕으로 여성 시민 참여는 물론이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시민참여활동은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니터링

24) 젠더 거버넌스는 성인지적 관점을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하는 것으로 성 주류화의 실행 주체인 공무원,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의원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의미함

또는 사회 참여 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이 경험이 주요 정책의사결정의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리더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리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여단과 기존의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 등 마을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동 사업 추진 방안 마련도 필요함

### 3. 교육 및 컨설팅 대상 및 내용의 범위 확대

#### 가. 정책형성 교육의 강화

-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프로세스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적인 방향 제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내용도 개념에 대한 이해, 보고서 작성, 성공 사례 분석,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 등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완성-심화 등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함
-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sup>25)</sup>

25) 경기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시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조율 및 갈등조정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 스스로 해결책과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견인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에 적합함
- 시민참여단의 역량강화는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자율적으로 장기간 활동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시민강사 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확대 및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음
- 시민참여단과 기존의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마을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의 기존 풀뿌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동 사업 추진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나. 컨설턴트 구성 및 역할 다양화

-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이행점검 평가 보고서 작성 특정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자체 사무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 교체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점 컨설팅이 필요함
- 지자체 담당자의 컨설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컨설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적인 컨설팅이 제공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방안을 제시하는 이원화된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방향설정,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안, 시민참여 유도 방향 등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단계와 컨설팅 과정에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공간계획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컨설팅을 위해서는 여성 분야 전문가 외에 도시, 건축, 행정,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단순히 여성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여성고용창출,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섭외되어야 함
  - 또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담당자가 아니라 각 부서의 관련 사업 담당자를 위한 컨설팅이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각 부서 사업 담당자들과 컨설팅 및 워크숍이 추진되어야 함

- 컨설팅의 유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컨설팅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지정 탈락지역 및 지정 준비 지역에 대한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정지역, 재지정 탈락지역, 지정 준비지역으로 지자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컨설팅이 제공이 필요함

#### 다. 타 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와 타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여성친화도시가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타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교환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거나 정보의 공유 등 타 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4. 예산의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도입

- 여성친화도시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소규모의 영세한 규모에서 탈피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여성친화도시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지고 여성가족부의 책임성과 관심이 높아진다면 관련예산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관련 예산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욱

확대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에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동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수사업을 기획하는 우수 지자체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V. 결론

-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는 여성친화도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여성친화도시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친화도시의 법률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임
    - 2016년 11월 기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지 않은 지자체 포함 전국 74개 지자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임
    - 2016년 기준 66개 여성친화도시 중 46개 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관련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의 (재)지정과 관련된 기준, 이행점검지표가 운영 중임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목표에 근거한 일정한 조성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지정받은 도시는 매년 이행점검지표에 근거하여 점검을 받으며, 5년 뒤에는 재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음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교육이 실시되고 컨설턴트 제도가 운영 중임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 담당 공무원, 의회의원,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 과정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 달성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여성친화도시의 우수사업 공모, 정책형성교육 예산으로 매해 1억 미만의 소규모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현장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함
    -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함
    -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의 구체적인 근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간과 관련된 요소를 규정하는 조례와 계획 및 지침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요소와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것임
    - 지정요소와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로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시민참여단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교육 및 컨설팅 대상 및 내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 정책형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자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임
    - 컨설턴트의 구성 및 역할을 다양화해야함
  - 예산의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법률적 근거의 강화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획 및 개발능력이 우수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의 개선으로 인한 발전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도시정주권 확보를 의제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 그동안 도시설계 및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증진을 통한 여성친화도시로의 내실있는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성별, 계층, 연령, 장애여부 등을 초월하여 모든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따라서 향후 정부는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강선미, 「여성친화도시사업 현황과 과제-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16.
- 국회입법조사처·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지역현안 간담회 자료집, 2016.
- 김양희 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8.
- 박태원, 「여성친화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16.
- 손문금 외,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 손태주 외,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 유희정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2010.
- 천현숙 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국토연구원, 2012.
- 최유진 외,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KWDI Brief』, no.34, 2015.

## [부록 1]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2009년~2016년)

### <200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구분	기준	조성원칙 및 내용
추진 단계별 기준	계획 수립	여성의 요구 조사, 지역정책 성별영향평가,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체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성대표성 확보, 추진 조직 및 인력
	지속성	근거조례 제정, 기존 조례 전면 재검토
	전문성	정책형성 교육, 젠더 매니저 운영
	평가 및 환류	추진단계별 평가 및 개선 추진
도시의 여성 친화성 기준	도로·교통	안전 및 약자 배려
	공원·녹지	성 평등가족친화성 및 안전성 확보
	산업·고용	여성인력고용 및 일·가정 양립 가능성 제고
	교육·문화	창의적 인재 양성 및 문화적 역량 강화
	사회복지	약자배려 및 다양성 수용
	공공시설	복합적 이용 및 주체적 참여 가능성
	주거단지조성	안전성 및 편의성 추구
도시의 여성 친화적 가치(도시 운영)	공동체 프로그램	통합과 협치 역량 강화
	안전성	예방 및 신속한 구제·지원
	쾌적성 및 친환경성	친환경 자재사용, 녹지공간 확보, 사람 및 자전거 우선 원칙 준수 등
	지역특화성 기준	지역문화의 성평등적 재구성, 도시디자인 등 특수시책 추진



<2010~201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여성친화 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30)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지역 여성현황 및 성 주류화 현황	10
	해당 도시의 조성 의지	추진 주무부서 지정 여부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실국별 회의 등 개최 여부	10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또는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여부	5
	관련 시민 참여도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구성 여부 및 참 여도	5
여성친화 도시 추진 계획의 내용 (50)	사업 비전 및 목표	목표 및 방향의 명확성 및 정책 영역의 다 양성	10
	사업 내용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10대 추진과제 및 지역특성 화 사업 추진 여부 및 내용의 독창성 등	15
	예산운용의 적절성	예산운용 계획의 효율성 및 재원확보방안 의 현실성	10
	네트워크 구축정도	내/외부의 소통추진기제 마련 여부 및 적 실성	15
여성친화 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환류 (20)	사업 기대효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각종 기대효 과	10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환류	사업 추진 실적의 자체점검 및 환류 기제 마련 여부	10
계			100

**<201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여성친화 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지자체 성 주류화 현황 및 실적	20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대내외적 활동 현황과 성과	40
	거버넌스 추진기반	민관협력 방식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여건	20
여성친화 도시 추진 계획의 내용 (10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내용의 부 합성	20
	사업 계획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세부 내용 의 실효성과 추진의 현실성 등	40
	예산 계획 적절성	현실 가능한 예산운용 계획 및 자원확보 방안	20
	평가 및 환류 계획 실효성	사업 추진 실적의 자체 점검 및 환류 기제	20
여성친화 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20)	사업 기대효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각종 기대 효과	20
계			200

**<201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항목	지표	내용	비중	
사업 기반 구축 정도 (40)	여성 대표성 및 성 평등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20)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5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기획예산총무부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	
		■공무원 교육계획에 성평등(성인지)교육포함 여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환류 실적	5	
	해당도시 의 조성 의지 (15)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5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관장 활동 실적 등	5	
	거버넌스 추진기반 (5)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여성친화 서포터즈 등 활동 현황	5	
	여성친화 도시 4대 목표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6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10)	■추진목표의 명확성	5
			■사업 목표와 관련 사업 추진계획의 부합성	5
사업 계획의 총실성 (40)		■사업 계획의 총실성과 구체성 및 실효성	20	
		■해당지자체 자체 신규사업 발굴	5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5	
		■연도별 성과지표 및 중장기 지표 수립	5	
		■사업 계획 단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5	
예산계의 적절성(10)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5	
		■지자체 총예산 대비 사업비 예산 비율	5	
계			100	

## [부록 2] 여성친화도시 관련 이행점검 지표의 변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점검 지표>

구분	기초과제	성과점검 영역
기초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도시 10대 과제 및 특수과제 영역의 반영 정도</li> </ul> </li> <li>•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대비 추진 정도</li> </ul> </li> <li>• 소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에 시민 의견 반영</li> </ul> </li> </ul>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다양성, 수</li> <li>• 시민 참여 촉진 사업</li> </ul>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li> <li>•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li> <li>•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특수 시책</li> </ul>
	정책의 성 주류화 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부서 설치 현황</li> <li>• 성인지적 법·제도 개선</li> </ul>
	성인지 교육(여성친화도시 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성인지 교육 제도화 여부</li> <li>•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자 비율</li> <li>• 시민 성인지 교육 참여자</li> </ul>
심화과제	안전, 여성능력개발, 취·창업, 가족친화마을(공동체),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별 관련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내용 평가</li> <li>• 영역별 신규 사업 발굴 여부 및 사업내용 평가</li> </ul>
지역특성화 사업	도시계획, 도로·교통, 주거단지, 다기능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내용 평가</li> </ul>

<201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

점검 영역	점검 지표	세부 점검 지표	내용
I. 책무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1. 추진 체계	주무부서의 위상과 규모	조직 내 주무부서의 위치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및 직급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관련 사업예산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추진체계	상시적·비상시적 회의구조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정기적 과제관리 카드 적용
	2. 법적 근거	여성친화도시조례	여성친화도시 근거 조례 제·개정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성평등한 제·개정 실적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12년 추진계획에 포함된 부서 및 사업 수
	3. 행정 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
		과제 발굴 워크숍	공무원 대상의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워크숍 1회 이상 참여 부서
		컨설팅 활용	컨설팅 활용 주기 및 횟수: 정례화 등 세부 컨설팅 내용 타부서에 대한 주무부서의 컨설팅 제공 여부
	4. 기타 책무성 장치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제도	여성친화도시 성과평가 반영 시스템 여성친화도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여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적용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적용·의무화 여부
	II. 추진 과정	1. 협의체	협의체·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영역	점검 지표	세부 점검 지표	내용
(거버넌스 체계)	2. 시민 참여 구조	시민 서포터즈/참여단/모니터단 등 운영 현황	시민 서포터즈·참여단·모니터단 등 구성, 법적 근거, 활동 정례화, 분과 등 시민(여성)단체의 사업 현황
	3. 시민 역량 강화	협의체·서포터즈·기타 시민 대상의 교육	협의체·위원회 위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 서포터즈·참여단·모니터단 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 일반 시민 대상의 여성친화도시 교육
	4. 여론 수렴 및 홍보	시민 여론 수렴	시민 대상의 다양한 방식의 여론 수렴 현황: 조사·면접·간담회, 여론수렴함 설치 등
		홍보	다양한 방식의 홍보 현황: 언론 보도, 세미나 개최, 리플렛 제작, 온라인 카페 운영 등
Ⅲ 사업 추진 내용 및 진전도	대표 사업1 대표 사업2	목표 부합성	•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목적에 부합하는지: - 사업의 목적과 단계별 목표 -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수단의 적절성과 자원의 연계성	• 투입된 수단과 접근방법이 적절한지: - 사업 투입 공무원 인력 - 사업 투입 예산 - 사업 추진 방법 -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체제 (네트워크)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도	• 해당 사업 과정별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도가 적절한지: - 주민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 등 의견 수렴 - 해당 사업의 단계별 주민의 참여 및 역할
		지역특성 반영도	• 지역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 사업과 관련한 지역 현황 분석 내용 - 지역 현안을 사업에 반영한 내용 - 해당 사업의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또는 기여 가능성)

<201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

점검 영역	점검 지표	세부 점검 지표
I.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1. 추진체계	주무부서의 위상과 규모
		사업추진 및 점검 체계
	2. 자치 법규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
	3. 행정 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
		과제 발굴 워크숍
		컨설팅 활용
	4. 기타 책무성 장치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적용 등
	II. 민-관 협력 체계	1. 위원회 또는 협의체 운영 현황
2. 시민참여 구조		시민 서포터즈/참여단/모니터단 등 운영 현황
3. 시민 역량 강화		협의체/서포터즈/기타 시민 대상 교육
4. 여론 수렴 및 홍보		시민 여론 수렴
	홍보	
III. 대표사업	1. 사업목적 및 내용	
	2. 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과정	
	3. 사업 추진 결과 및 의의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

영역		1년차 도시	2년차 - 5년차 도시	
개요		총괄평가	총괄평가	
우선순위		주요업무 반영(중장기계획의 시행계획 등)	주요업무 반영(중장기계획의 시행계획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제도화	사업관련 조례 제·개정	사업관련 조례 제·개정	
		사업발굴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실적	
		-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범위	
	주무부서	주무부서 인력현황	주무부서 인력현황	
		주무부서 사업관리 방식	주무부서 사업관리 방식	타부서 컨설팅
			주무부서 여친사업 예산	주무부서 여친사업 예산
	정책개선	-	주요 사업 GIA 개선 실적	
	공무원 교육	현황 및 참여비율 (5급 이상, 전직원)	현황 및 참여비율 (5급 이상, 전직원)	전년대비 교육 특장 서술
			-	-
	부서협력 체계	간부회의	간부회의	
		보고 및 평가회	보고 및 평가회	
		여친도시 T/F	여친도시 T/F	
		과제발굴워크숍	과제발굴워크숍	
		-	기타협의채널	
		-	여성의 공공부문 의사결정직 증대 (사업 발굴 및 성과)	



영역		1년차 도시	2년차 - 5년차 도시
민-관 협력 체계	위원회	교육현황	교육현황
		구성다양성	구성다양성
	참여단	교육현황(시민, 참여단)	교육현황(시민, 참여단)
		구성다양성	구성다양성
		활동내용	활동내용
			정책의사결정과정 참여
	사업 발굴 및 성과	사업 발굴 및 성과	
		사업 발굴 및 성과	
	협의체	교육현황	교육현황
		구성다양성	구성다양성
활동내용		활동내용	
		사업 발굴 및 성과	
컨설팅	활용현황	활용현황	
사업	2014 시행사업 리스트 공모사업 리스트	2014 시행사업 리스트(발굴방법) 공모사업 리스트 기존사업 개선 신규사업 발굴	

### [부록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역별 컨설턴트 배치현황

광역	소속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 부연구위원
	하랑성평등연구소 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 실장
	부산카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
대구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실장
인천	인천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광주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 실장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위원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센터장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 팀장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하랑성평등연구소 소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대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사업부장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부장
충북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 팀장
충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북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 부연구위원
	전남여성플라자 객원연구원
경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 부연구위원
	도시와 젠더 대표
경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 부연구위원
	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실장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6)

## [부록 4]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주요 사업

	사업 분야	사업명	추진 도시
추진 기반	성 평등 정책 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조례 및 규칙의 성 평등적 정비,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공무원 교육 활성화, 시민참여단 운영 등	공통
일/경제	취업 또는 고용 지원 인프라	창업·취업기관 네트워크, 여성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등	10개
	취·창업 박람회	여성취업박람회, 구인·구직 개척단 등	7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여성, 베이비부머, 노인, 장애인 지원	16개
	여성 농업인	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소득창출, 소규모 생산공동체 지원 등	7개
	여성(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환경조성 및 확대 등	15개
	사회적 기업(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또는 공동체 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22개
안전	안전 지킴이	안전지킴이, 바이크 순찰대, 주부 순찰단 등	13개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허브, 안심귀가동행 등	5개
	안심교통수단	안전택시 및 버스 승강장, 택지 및 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11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생활안전·방범·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설치와 WHO 안전 도시	23개
	안전교실	아동, 보행약자, 여성 등에 대한 교통 및 재난 안전교육	14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13개
	아동·여성 보호(인권) 지역연대	지역연대 구축, 운영, 활성화	19개
	CPTED 활용	CPTED 설계 적용 각종 시범 사업 및 관련 조례 제정	12개
공간	개별 건축물, 공원	공원조성 및 정비,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등	9개
	마을만들기	여성친화마을, 안심마을, 행복마을 등	17개
	거리 조성	거리 디자인 개선 사업, 안전 또는 안심 거리, 특화거리 등	9개
문화		각종 축제 및 어울림 마당	6개

자료: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p.20.

## [부록 5] 여성친화도시 조례 현황

지역	지정 년도	지정 도시	조례명	시행일	제·개정
서울	2011년	도봉구	조례 없음		
	2012년	서대문	조례 없음		
		마포구	조례 없음		
	2015년	성동구	조례 없음		
		은평구	조례 없음		
부산	2011년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10.22.	일부 개정
	2012년	연제구	조례 없음		
	2013년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7.10.	제정
		남구	부산광역시남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4.8.11.	제정
	2014년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12.5.	일부 개정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2016.4.1.	제정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4.7.10.	제정
	2015년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7.10.	제정
		수영구	조례 없음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2016.8.1.	일부 개정
대구	2010년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9.21.	전부 개정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3.12.10.	일부 개정
	2012년	수정구	대구광역시 수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10.31.	일부 개정
인천	2011년	동구	조례 없음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6.9.10.	일부 개정
	2013년	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2.11.23.	제정
광주	2011년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2016.9.23.	일부 개정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6.10.10.	일부 개정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5.9.30.	일부 개정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2015.7.1.	일부 개정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6.5.25.	일부 개정

지역	지정 년도	지정 도시	조례명	시행일	제·개정
대전	2013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9.25.	일부 개정
	2015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5.19.	일부 개정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6.5.	제정
경기	2010년	수원시	수원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5.11.13.	일부 개정
		시흥시	조례 없음		
	2011년	안산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2.10.22.	일부 개정
		안양시	조례없음		
	2012년	의정부 시	의정부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4.10.16.	일부 개정
		광명시	조례 없음		
	2013년	용인시	용인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5.7.28.	일부 개정
	2014년	고양시	조례 없음		
		김포시	조례 없음		
	2015년	부천시	조례 없음		
강원	2010년	강릉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5.11.11.	일부 개정
	2011년	동해시	조례 없음		
	2012년	영월군	영월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2016.10.21.	일부 개정
			영월군여성친화도시모니터운영조례	2014.7.8.	제정
2013년	원주시	영월군여성친화도시모니터운영조례	2015.7.1.	일부 개정	
충북	2010년	청주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11.11.	일부 개정
	2012년	제천시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6.4.8.	일부 개정
충남	2011년	아산시	아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2015.12.15.	전부 개정
	2013년	보령시	보령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5.1.1.	일부 개정
		태안군	태안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6.11.8.	제정
	2014년	홍성군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4.3.31.	제정
	2015년	논산시	논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6.7.11.	일부 개정

지역	지정 년도	지정 도시	조례명	시행일	제·개정
전북	2009년	익산시	익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2010.10.6.	제정
			익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운영규칙	2015.5.27.	일부 개정
	2011년	김제시	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2013.8.19.	일부 개정
	2013년	남원시	조례없음		
전남	2009년	여수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5.10.2.	일부 개정
	2011년	장흥군	조례없음		
	2015년	강진군	조례없음		
경북	2011년	영주시	영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2015.9.24.	일부 개정
	2012년	포항시	포항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3.1.8.	제정
	2013년	구미시	구미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4.4.30.	제정
		경산시	경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6.6.16.	일부 개정
2015년	철곡군	철곡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5.6.1.	제정	
경남	2011년	창원시	조례없음		
		김해시	김해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2016.10.14.	일부 개정
		양산시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2016.7.18.	일부 개정
	2014년	거창군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015.3.25.	제정
제주	2011년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2015.11.4.	일부 개정

##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49호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한 과제-119 소방안전체험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6.12.30.	조인식
제48호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6.12.30.	김유향
제47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6.12.28.	유재원
제46호	이주민·북한이탈주민 건강정보 문해력 관련 행정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6.12.27.	김주경 이승현
제45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황과 과제	2016.12.26.	김경민
제44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6.12.23.	장은덕
제43호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및 조달시스템 통합방안	2016. 6. 27.	정도영 김민창 권순조
제42호	통관 제도 및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5.12.31.	이수진
제41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2015.12.31.	정준화
제40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5.12.28.	조주은
제39호	미국 학교안전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 버지니아주(州)를 중심으로 -	2015.12.22.	조인식
제38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5.12.21.	이혜경
제37호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5.12.16.	원시연
제3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2015.10.7.	하혜영 권용훈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5호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2014.12.31.	정준화
제34호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4.12.31.	조주은
제33호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2014.9.19.	이현출 조규범
제32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4.	이수진 김보례
제31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2014.5.19.	원시연
제30호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2014.5.2.	정도영 조주현 서경택
제29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2.28.	손을춘
제28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 -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	2013.12.31.	조주은
제27호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출입관리·시설관리·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2013.12.27.	조인식
제26호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2013.12.13.	배민식
제25호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24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 현장조사보고서 제50호

---

발 간 일 2017년 1월 9일  
발 행 이 내 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472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359-14

© 국회입법조사처, 2017



현장조사보고서 제50호

##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